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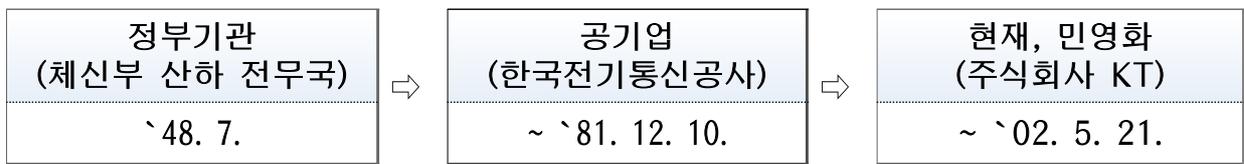
주식회사 KT(전, 한국전기통신공사) 경력 인정 범위

□ 관련근거

-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4의2(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)

□ 주식회사 KT 연혁 및 현황

- (KT 변천사항)



- (면허취득) 전문소방시설공사업[제2017-02-00447호, 2017. 8.29.]

□ 주식회사 KT 경력 인정 범위

- **민영화 이전 기간 : 2002. 5. 21.이전까지(ex. 1982.1.1. ~ 2002.5.20.)**

- 담당업무 :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유지관리

- 제출서류 : 경력확인서-----한국소방시설협회 서식 과 증빙서류

※ 단, KT자회사 근무기간은 인정 안됨.

- 증빙서류

1. 소방서에서 발행한 “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” 또는

관할 소방담당자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

2.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소방업무를 수행한 확인 가능한 서류

-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“소방안전관리자” 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.

* 소방안전관리자로 선·해임 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 가능

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4의2]

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(제24조제1항 관련)

1. 공통기준

다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2호라 목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“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(이하 “소방 관련 업무” 라 한다)” 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
- 1)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공사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
- 2) <생략>
- 3)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

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대상기업)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(이하 “對象企業” 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1999. 1. 26., 2002. 1. 14.>

1.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[한국담배인삼공사](#)
2.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[한국전기통신공사](#)
3.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[한국가스공사](#)
4. [한국중공업주식회사](#)
5.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[인천국제공항공사](#)
6.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[한국공항공사](#)